

교원 연봉제 운영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보수"라 함은 <u>연봉과 제수당</u>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4. "월봉액"이라 함은 개인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</p> <p>5. "일할계산"이라 함은 그 달의 월봉액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, "근무일수"라 함은 발령일을 포함해서 재직한 일수이며 중간의 휴무일을 포함한다.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보수"라 함은 <u>연봉, 제수당 및 비누적 성과급</u>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"<u>비누적 성과급</u>"이라 함은 <u>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기본연봉 이외에 최근 1년내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한다.</u></p> <p>5. "월봉액"이라 함은 개인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</p> <p>6. "일할계산"이라 함은 그 달의 월봉액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, "근무일수"라 함은 발령일을 포함해서 재직한 일수이며 중간의 휴무일을 포함한다.</p>	<p>비누적 성과급 항목 신설</p>
<p>제4조(보수의 체계) 교원의 보수체계는 <u>연봉 및 제수당</u>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보수의 체계) 교원의 보수체계는 <u>연봉, 제수당 및 비누적 성과급</u>으로 한다.</p>	<p>비누적 성과급 추가</p>
<p>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4장 비누적 성과급</u></p> <p>제22조(비누적 성과급) ① <u>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, 최근 1년간의 업적을 평가하여 비누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성과급의 지급대상자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.</u></p>	<p>비누적 성과급 부분 신설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4장 보칙</u></p> <p>제22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또는 기타의 예에 준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5장 보칙</u></p> <p>제23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또는 기타의 예에 준한다.</p>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</p>	